

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2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1. 13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0772호)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본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일부 조정(안 제6조)

- 1)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, 기타 시설물의 확정에 대한 사항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에 따라 공사 수행에 대한 기성 지급이 자산의 취득으로 처리되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됨.
- 2)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설치여부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추가함.

나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조항을 정비함.(안 제29조)

다. 사용·대부료의 인상금액에 대한 감액 조정(안 제36조)

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의 사용료·대부료 등의 인상금액에 대한 조정 한도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완화됨에 따라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감액 조정비율을 70%까지 확대

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나. 관련법령 : 붙임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합의 : 해당없음

마. 2008.10.2. ~ 10.22.까지 입법예고한 결과, 제출 의견 없었음.

**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"제5호"를 "제6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

제29조 제2호 중 "지방산업단지"를 "일반산업단지"로 한다.

제36조 제1호 중 "100분의 50"을 "100분의 70"으로, 같은 조 제2호 중 "100분의 45"를 "100분의 65"로, 같은 조 제3호 중 "100분의 40"을 "100분의 60"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)제36조의 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·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<u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</u>」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3조의 규정에 의한 "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"의 확정사항</p> <p>3 ~ 4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5.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29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(이하 "외국인투자기업 등" 이라한다)에 대부·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<u>지방산업단지</u>,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</p> <p>3 ~ 6 (생략)</p>	<p>제6조(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<삭 제></u></p> <p>3 ~ 4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·매각 대상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</p> <p>.....</p> <p><u>일반산업단지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3 ~ 6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36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영 제 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·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10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지목상 전,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·대부하는 경우 : <u>100분의 50</u> 2. 생산·연구시설 및 주거시설(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)로 사용·대부한 경우 : <u>100분의 45</u> 3. 기타의 경우 : <u>100분의 40</u> 	<p>제36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: <u>100분의 70</u> 2. : <u>100분의 65</u> 3. : <u>100분의 60</u>

■ 관련법령 발췌(조례안 순)

◆ 조례안 제6조 관련 (삭제 및 신설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3조 (공유재산의 구분) 법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"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"이라 함은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고, "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"이라 함은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건물,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.

제9조 (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)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0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
◆ 조례안 제29조 관련 (인용 규정 용어 변경에 따른 개정)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

제7조 (일반산업단지의 지정)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·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. 다만,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(대상지역에 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·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)과 협의하여야 한다.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8조 (농공단지의 지정) ⑤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 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 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.

◆ 조례안 제36조 관련 (사용료·대부료의 감액을 개정)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6조 (사용료의 조정)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·수익허가 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.

제34조 (대부료의 조정)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.